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검사유효기간			
신청내용	연장(유예) 신청 기간			
	연장(유예)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종합검사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합니다)이 확인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